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19나68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훈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4. 9.

판 결 선 고 2021. 5. 14.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7가단25969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이 2017. 8. 14.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만기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41,9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 취소 및 해약환급금 반환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만기보험금수익자 변경행위 취소 및 만기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보험계약 변경행위를 변경계약이나 수익자 변경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 부분 변경을 청구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 중 원상회복으로 구하는 금전지급청구 부분만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기로 한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와 C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하여 2017. 8.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1,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4. 12. 31. 원고와 피보험자 및 만기보험금수익자 C, 입원/장해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만기일자 2018. 12. 31.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11.까지 보험료(월 26,100원, 120회)를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2. 4. C에게 만기를 2002. 12. 4.로 정하여 400만 원을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C은 2002. 4. 14.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한 이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63430호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6. ‘C은 원고에게 11,738,900원 및 그 중 3,945,640원에 대한 2017.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C은 2017.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수익자를 C에서 누나인 피고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0. 8. 27. 피고에게 만기보험금 2,941,9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11,738,900원 및 그 중 3,945,640원에 대한 201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

2)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이외에 가치가 있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

1)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C이 2017. 8. 1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익자변경행위’라 한다)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상 만기보험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원고의 채권행사를 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C은 변제능력이 없고 대장암4기의 병환에 있었으며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는 C의 누나로서 C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수익자변경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만기보험금 2,941,91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441,914원(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1,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해약환급금 반환청구 부분은 당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장성훈, 판사 최수진

(별지)

목 록

순번	증권번호	보험사	피보험자	계약일	연기보험금수익자	상품명
1		원코		1994.12.31.	에서 으로 변경 (2017. 8. 14.)	

끝.

